

인천광역시 용진 고시 제2016 - 139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개정

2016. 8. 11.

용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개정

## 개 정 이 유

낙시어선의 안전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함.

## 주 요 내 용

- 낙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서해특정해역)의 제한
- 낙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낙시어선업자의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 낙시어선업자의 낙시어선업 외 주류 반입·판매·제공 행위 금지

## 참 고 사 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법령발취 : “별지 참조”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 방지,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와 낙시어선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 제7호의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 낙시어선업자, 선원 및 낙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

**제3조(영업시간의 제한)** ①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 까지로 한다.

② 단, 레이더 반사기 등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어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낙시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허용한다.

1. 11월부터 3월까지 : 05:00 ~ 20:00
2. 4월부터 10월까지 : 04:00 ~ 21:0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출입항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운항횟수의 제한)** ①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이하 “낚시어선업”이라 한다)을 1일 2회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업구역의 제한)**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선까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수역으로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진흥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 조업규정」 등에 의한 제한·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해5도서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 조업규정」에 따라 해당 어장 수역에 한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공동영업구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내의 모든 도서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원칙적으로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3항의 지역에 부득이 안내 하는 경우 당해 낚시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낚시어선을 대기시켜야 한다.

⑤ 5톤 미만의 무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발생시 휴대폰으로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소방서, 출입항신고서(통제소)등과 항시 연락 가능한 통화범위내의 해역으로 제한 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선주·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제1항에 따른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 선장의 안전대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준수)**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낚시 제한·통제구역의 준수)** 낚시어선의 승객은 개별법에 따라 제한 및 통제구역 등의 해역에 낚시어선 안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의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낚시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7.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기타 준수사항)** 낚시어선의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미끼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상에 분뇨, 폐기물,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5-08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